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붙임참조

4. 검 토 의 견 : 붙임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확과일부용어를 정비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복지여성국장과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확히 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관리 공무 원의 명확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